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0. 2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10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10. 22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양성우】

가. 제안이유

- 구민 대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 사용료 부과기준 정비 및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(안 제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
- [별표]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추가(안 제9조제2항 관련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입법예고: 2025. 9. 4. ~ 9. 2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구민 대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 사용료 부과기준 정비 및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① 주요 개정내용

- 사용 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(안 제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
- [별표]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추가(안 제9조제2항 관련)

②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

- 기존 조례가 청사 내 사무·업무 공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민 이용시설에 관한 관리조항이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행정효율성 및 주민편의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임.
- 문언 정비 및 구민 이용시설 추가를 통한 청사시설 관리체계의 명확화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청사 내 시설물 관리 범위를 구체화하고,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명시함으로써 시설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위임 근거와 조례의 체계에 부합하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운영과 관련한 예산·관리주체·운영방식 등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 보완이 필요하며, 구민 이용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 방안을 병행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]

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구분	사용료	내용	비고
1층·지하 1층 로비	무료	□ 평일 09:00~18:00 이용	1. 1회 이용시간 초과 사 용 시 시간 단위별 일할 계산 (초과 시간이 1시간 미 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 로 간주) 2.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 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 함 3. 사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은 사용료의 50퍼센 트로 함 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 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 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 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 리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 라 주차료 징수 5.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 치세는 별도
2층 대강당	300,000원/회	□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□ 평일 09:00~21:00 이용 □ 토요일·공휴일 09:00~	
4층 시청각실	100,000원/회	18:00 이용 ※ 냉·난방 가동 시 사용료 에 냉·난방비 가산	
구민광장	150,000원/회	□ 1일 이용시간은 10시간 이내 □ 평일·토요일·공휴일 09:00~19:00 이용	
햇빛광장			
구내식당	100,000원/회	□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□ 토요일·공휴일 08:00~ 19:00 이용	
냉·난방 비	20,000원/시간 (대강당)	□ 냉·난방 적용기간 - 냉방 : 6월~9월 - 난방 : 12월~2월	※ 기온고려 냉·난방가동 시간 변동
	10,000원/시간 (시청각실)		